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5,675,429	26,270,263
일반회계		795,977,720	23,879,332
특별회계		79,697,709	2,390,931
	공기업특별회계	41,990,525	1,259,7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990,525	1,259,716
	기타특별회계	37,707,184	1,131,21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2,570	20,477
	자활기금특별회계	478,943	14,36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766,852	113,0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9,900	6,897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658,905	79,767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7,104	6,813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548,000	16,440
	수질개선특별회계	29,114,910	873,44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